

제253회 영등포구의회  
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 
설치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우경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6. 20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 
설치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46호로 2024년 5월 31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,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제3조)

나.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공사표지판, 시설표지판, 운영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

(안 제5조~제7조)

라.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마.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바.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사.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 
「건설산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4. 5.~ 4. 10.)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제정조례안은

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장려하고,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##### 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,
- 안 제5조(공사표지판의 설치)부터 제7조(운영표지판의 설치)에서는 지원 표지판 종류(공사표지판, 시설표지판, 운영표지판)에 따른 설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8조(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)와 제9조(표지판 등의 철거)

- 에서 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와 철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10조(비용부담)와 제11조(관리감독 및 평가)에서 비용부담 및 관리감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### ○ 검토 결과

- 지난 '23년 8월 행정안전부<sup>1)</sup>는 「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」 발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환기하고,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,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,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<sup>2)</sup>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음.
- 이러한 기초에 발맞춰 구(區)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, 더 나아가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조사업체의 책임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.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됨.
- 한편,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·관리 및 철거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위임 근거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sup>3)</sup>에서 찾을 수 있음. 또한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

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공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.

- 1) 행정안전부는 「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,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」(2023.8.3.)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.
- 2)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및 9개의 자치구(강북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성북구, 양천구, 용산구)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- 3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제정. 1988.5.1.)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음.

###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행정안전부

####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

제9조(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,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#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기획예산과

제6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)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, 사용 장소,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3. 담보의 제공

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
2.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

## 2 건설산업기본법

제42조(건설공사 표지의 게시)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, 발주자, 시공자,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